

[공고번호 : 세종-성장사다리-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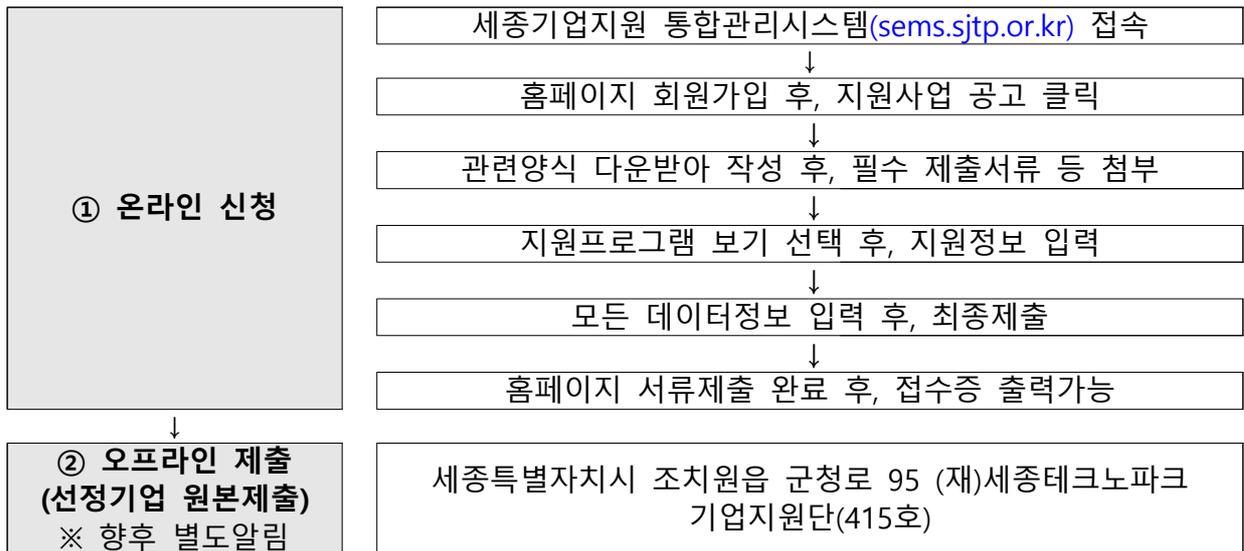
23년도 제2차 세종스타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모집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 스타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촉진
- 지원규모 : 기업별 20,000천원 내외
※ 기업별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 '22년 세종 스타기업 총 7社 (1차 선정기업 및 졸업기업 제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3. 11. 7.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7. 29.(월) ~ 8. 11.(금) 18:00
 - 접수방법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 홈페이지 접수



- 지원기업은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ems.sjtp.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단일 또는 2개 이상 패키지 지원

○ 기업당 2천만원 내외 지원사업 제한 없이 건별 한도 내에서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지원목표	지원금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시험) ※ 단순 완제품 양산, 원재료 구입 등은 제외	7개사	20백만원 내외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상표)출원 및 등록 ※ 협약 후 3개월 이내 특허출원 조건부		3백만원 내외
기술이전	- 국내 기술 이전 지원 (공공 및 민간의 우수 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원천기술, 사업아이템 등 제공)		8백만원 내외
인증, 시험·분석	- 시험분석, 국내외 제품 인증 - 시스템인증, 벤처, MAIN비즈, 이노비즈 등 ※ 협약 후 3개월 이내 인증, 시험성적서 취득 조건부		7백만원 내외
제품, 포장, 브랜드 개발	- 제품디자인, 패키지(포장)디자인, - 브랜드개발(BI, CI, 네이밍 등)		16백만원 내외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4백만원 내외
제품홍보	- 제품 홍보물 제작 (인쇄물, 영상, 홈페이지, 앱)		7백만원 내외
전시회참가	-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6백만원 내외
기업경영 컨설팅	- 기업진단을 통한 경영 컨설팅 등		8백만원 내외
기타 프로그램	- 메뉴판 외에 스타기업 기업성장 전략 수립 시 도출된 프로그램		-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1社당 20,000천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 가 세)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의 10% · (사업비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20,000,000원(스타기업별 상이함) - 기업부담금 : 2,000,000원(지원금의 10%) - 부가세(VAT) : 2,200,000원(사업비의 10%) <p>⇒ 총사업비는 : 24,200,000원(건적서 금액 / 단위는 협의 후 절사가능)</p>		

※ 기업별 지원금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 잔여예산 기준으로 기업당 총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VAT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

□ **지원방법:** 간접지원(공급기업 매칭 필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기관(업)의 신청서와 견적서를 제출
- 견적서 內 상세한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지출계획 내재

<공급기관(업) 역할 및 매칭방법>

- **(주요역할)** 지역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기관(업) 및 전문가로 구성
- **(매칭방법)**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공급기관(업)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 사업 선정 시 세종TP-선정기업-공급기관(업)간 3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지급)**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구 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및 지원 필요성	- 목표설정에 대한 타당성 - 사업화 실현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25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지원 결과물의 사업화 적용 가능성 - 지원 결과물의 활용가치 등	25																												
공급기관과의 협력 및 매칭 적정성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기관(업)의 전문성 - 공급기관(업) 활용계획에 대한 사전준비성	2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기간 내 사용계획에 대한 명확성	25																												
합 계		100																												
우대가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50%;">우대가점 기준</th> <th style="width: 20%;">증빙서류</th> <th style="width: 20%;">가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td> <td>지역사업 평가단 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td> <td>인증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td> <td>인증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td> <td>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td> <td>TP 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td> <td>사업자 등록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지역사업 평가단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1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 등록증	1	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지역사업 평가단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1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 등록증	1																											
총 계		103																												

※ 선정평가 결과 “선정” 판정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신청기업 공통서류	별첨 1. 신청서	1부	
	별첨 2. 사업계획서	1부	
	별첨 3.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별첨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1부	
	별첨 5. 신청자격 확인서	1부	
공급기업 서류	별첨 6. 공급기관(업) 기본정보	1부	
	별첨 7. 공급기관(업) 기본요건 검토서	1부	
	별첨 8. 공급기관(업)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1부	
	별첨 9.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별첨 10.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별첨 11. 세부견적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
	별첨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별첨 13. (필요시) 기타자료 등	1부	

4] 유의사항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매출, 수출, 신규고용 등)
- 신청서 접수 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심사하고,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최종 선정 후에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지원금은 심의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우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참고]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aggi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의처

담당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조창삼 선임연구원	044-850-2142	-

붙임 1. 신청서 양식 등 1부.